#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51 발의연월일: 2020. 8. 21.

발 의 자:조승래・이정문・김민기

김회재 · 박찬대 · 이상헌

최종윤 • 도종환 • 황운하

장철민 • 박영순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발전용원자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있음.

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축·관리업무를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사업출연 금을 출연하였으며,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대규모 사 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 터의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·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 이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·장비 구축·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5조제1항제 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·장비의 구축 및 관리
-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)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축 중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하여는 구 축이 완료될 때까지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에 같은 호의 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업무의 위탁) ① 원자력안	제45조(업무의 위탁) ①
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	
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	
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	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원	
자력연구원, 「방사선 및 방사	
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	
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	
원,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	
법」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	
술원,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	
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	
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	
수 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
	<u>휘센터 시설·장비의 구축</u>
	<u>및 관리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
	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
	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

해당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에 출연할 수 있다.